

建築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3374號

建築法 施行令中 改定된 條文은 아래와 같음
第2條(定義)

10號：工事監理者라 함은 建築士法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를 管理하는 建築士를 말한다.

11號：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

第2條의 2 (都市計劃區域의 準用) 法 第3條 第2項 및 第5條 第4號에서 “閣令으로 정하는 경 우 또는 地域”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市 또는 邑의 區域과 道路法의 規定에 의한 1級 國道 및 2級國道의 中心線으로 부터 兩則 500미터의 區域을 말한다.

第2條의 3 (職權의 委任) ①法 第5條에 관한 區廳長에게 委任 할 수 있다. 다만, 特殊建築物 및 特殊建築物 이외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300平方미터 이상이거나 4層이상인 建築物과 서울特別市, 釜山市長 기타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區域의 建築物을 제외한다.

第5條(許可 申請書等) 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書에 關係書類를 添附하여 이를 市長(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 第1項(公用建築物에 對한 特例)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工事を 着手하기 前에 그 工事에 관한 設計圖書를 管轄 市長, 郡守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依하여 設計圖書를 送付받은 市長, 郡守는 遲滯없이 이를 審查하고 그 結果를 前項의 長 또는 委任을 받은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法 第7條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

中 改正 部分

1968年 2月17日 公布

體가 建築工事を 完了 하였을 때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條의 2 (新設 : 駐車場設置基準) 法 第22條2의 規定에 의하여 延面積이 2,000平方미터 이상의 特殊建築物中 建設部分으로 定하는 建築物을 新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建築物 또는 그 塊地내에 다음 基準에 의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 郡守가 隣近에 당해 建築物用의 專用駐車場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延面積의 2,000平方미터 이상 2,500平方미터 미만인 때에는 90平方미터 이상의 駐車場

2. 延面積이 2,500平方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500平方미터마다 18平方미터를 加算한 面積의 駐車場

第111條3 (新設 : 國旗掲揚臺의 設置등)

① 商業地域내에 있는 幅員 15미터 이상의 道路에 面하여 2層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上으로 부터 8미터 地點의 壁面에 높이 2미터의 國旗掲揚臺를 道路에 面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② 3層 이상의 建築物 또는 延面積 1,500平方미터 이상의 建築物을 新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에는 同建築物의 1層에 있는 出入口, 管理事務所, 守衛室이나 그 附近에 建設部長官의 協議를 얻어 遷信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郵便物受取函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114條의 2 대지 第114條의 7을 第114條의 4대지 第114의 9로 하고 第114條 다음에 第5章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第五章 第2節 道路및建築線(新設)

第114條의 2 (道路의 폐止 또는 變更 新設)

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廢止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許可申請書를 市長, 郡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區間
2. 延長
3. 幅員
4. 廢止(變更) 内容과 理由
5. 位置圖
6. 당해 道路에 관련되는 住民의 廢止(變更) 同意書

第114條의 3道路에 面한 建築物의 位置의 指定 法 第31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 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幅員이 8미터 이상이고 人道와 車道의 區分이 없는 道路에 沿接한 地域으로서 都市計劃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建築物중 道路에 面한 1層의 壁面의 位置를 公共의 通行에 供하게 하기 위하여 建築線으로부터 1.5미터 後退하여 指定할 수 있다.

第114條의 4 (公園境域內의 建築物) :

(第2項 및 第3項 新設)

② 都市公園중 市民의 利用을 위하여 市長, 郡守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指定, 公告한 公園에 있어서 法 第32條 第7項에 의한 “公園目的에 필요한 建築物”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前項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6號의 建築物을 말한다.

③ 어린이 놀이터를 위주로 하는 公園에 있어서 法 第32條 第7項에 의한 公園目的에 필요한 建築物 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第1項 第1號 및 第4號의 建築物을 말한다.

第114條의 8 (臨港地區 내의 建築制限)

都市計劃法 第24條 第1項과 同法施行令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臨港地區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범위내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建築物만을 建築할 수 있다.

1. 海事에 직접 관계되는 公用建築物 및 商社事務所와 이에 부속되는 駐車場 및 車庫
2. 臨港鐵道施設, 造船 및 船舶修理施設
3. 水產物加工工場
4. 海事關係者를 위한 厚生施設
5. 港灣利用을 위한 施設物

第114의 9 (業務地區內의 建築制限) 都市計劃法 第24條 第1項과 同法施行令 第14條의 2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業務地區내에 있어서는 法別表의 1중 (5)내지 (7)에 개기하는 建築物 및 法別表의 2에 개기하는 建築物의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第114條의 10(再開發地區內의 建築制限) : (新設)
都市計劃法 第24條 第1項과 同法施行令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再開發地區내에 있어서는 法別表의 그 法別表의 4에 개기하는 建築物의 범위내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第7章 建築物의 垈地面積 및 높이

第115條 第115條의 2로 고침

第115條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 新設) 市長, 郡守가 法 第39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區域을 指定하여 建築物 垈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號에 개기하는 面積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居住地域, 商業地域 또는 混合地域안에 있어서는 90平方미터

2. 工業地域 또는 緣地域안에 있어서는 330 平方미터

3. 風致地域, 業務地區, 防火地區,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再開發地區안에 있어서는 330平方미터

4. 前各號에 개기한 地域 또는 地區외의 기타地域 또는 地區나 地域 또는 地區의 指定이 없는 地域안에 있어서는 90平方미터

② (높이의 緩利措置) 法 第41條 第3項의 規定의 同條 第1項의 規定의 適用 緩和에 關한 措置는 本章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121條(認可) ① 市長, 郡守가 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를 特히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은 建設部長官의, 기타의 市長과 郡守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市長, 郡守가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規則을 制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은 建設部長官의 기타의 市長과 郡守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129條 (許可通報) 法 第53條의 4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郡守가.....

附 則

①(施行日)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이 令 施行이전에 종전의 法令에 의하여 받은 建築許可는 이를 1 令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